

#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433
----------	-----

2021. 7. 13.  
복지도시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7. 1. 강남구청장(어르신복지과)

나. 상정의결

- 제29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2021. 7. 13.)

“ 원안가결 ”

## 2. 제안이유( 제안설명 :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

- 서울강남구 추모의 집의 위탁기간 및 방법 등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장기등기증자를 감면대상자로 포함

## 3. 주요내용

가. 강남구 추모의 집 관리비 납부방법 변경(안 제 13조)

나.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감면사항 신설  
(안 제 14조)

## 4. 관련근거 및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2) 입법예고(2021. 5. 14. ~ 2021. 6. 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개선권고사항 반영

(5) 성별영향분석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6)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원안가결

## 5.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이상원 )

○ 본 건은 서울강남구 추모의 집의 위탁기간 및 방법 등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장기등기증자를 감면대상자로 포함하고자 제출된 안건임

○ 안 제13조(사용료 및 관리비의 부과·징수) 제1항제1호 중 “사용료 및 관리비(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를 “사용료를 납부하고 관리비는 위탁자와 개별계약에 따른다”로 규정하는 사항은

현행 사용자가 사용료 및 관리비를 구에 납부하고, 이중 관리비를 다시 구의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관리운영자에게 지급하던 사항을 사용자가 사용료만 구청에 납부하고, 관리비는 사용자가 관리운영업체에 직접납부하는 방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행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설명을 통한 변경 사유 설명이 요구됨

○ 안 제14조(사용료의 감면)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1)에

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또는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사람(특수임무수행 중 과건된 지역에서 체포된 사람을 포함한다)

2.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부상(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입은 사람으로서 그 부상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3. 특수임무공로자: 특수임무수행을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배우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2)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배우자”,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3)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를 추가한 바, 추가 사유 및 대상자별 현황 설명이 요구됨

○ 안 제15조(운영위탁)제2항에 “위탁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4)에 따른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나 ‘강남구 추모의 집’은 예은추모공원 봉안시설 중 일부(16.4%)를 분양매입하여 2006년부터 현재까지 관리 운영을 위탁하고 있고 봉안시설은 구와 사용주민이 1:1 계약을 맺고 사용권한은 각 개

- 2)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7조에 따라 등록이 된 자(이하 “5·18민주유공자”라 한다)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5·18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상이(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후유증으로 사망한 사람으로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은 사람
  2.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 따른 장해등급(이하 “장해등급”이라 한다)의 판정을 받고 보상을 받은 사람
  3.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
- 3)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장기등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 4)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제5조(승인 및 동의)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는 그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이하“구의회”라 한다)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2. 재계약 하는 경우
- 제6조(민간위탁 동의안) 구청장이 제5조에 따라 구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및 범위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기관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가구·장비·시설 및 기술 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근로조건
  5. 책임능력 및 공신력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요 사항
- 제8조(수탁기관 선정) ① 제7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구청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게 하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간위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제7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
- ③ 수탁기관 선정을 위하여 심사하는 경우 평가항목에 대한 심사위원별 평가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하여 가장 높은 득점의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한다.

인에게 있는 바, 본 조문 신설의 실익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한편, 추모의 집 운영 및 안치 현황(※ 집행부 자료 재구성)은 별첨과 같으니  
참고하기 바람

## 6. 질의 및 답변 요지

- 질 의 : 우리 구민들의 ‘강남구 추모의 집’ 이용 현황은 어떠한지
- 답 변 : 2005년도에 강남구에서 5,248기를 분양받았는데 현재 8.8%에 해당하는 467기만 구민들이 이용하고 있음
- 질 의 : ‘강남구 추모의 집’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보이는데
- 답 변 : ‘강남구 추모의 집’이 충북 음성군에 소재하고 있어 서울에서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구민들이 많으신데 실제로 진천 IC에서 바로 인접한 위치에 있어 강남에서 1시간 3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접근성이 많이 나쁘지는 않다고 보임. 향후 경로당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강남구 추모의 집’ 현장투어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7. 토론 요지 :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사항 : “없음”

붙임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